

19. 동의대 사건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판례집 17-2, 311>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이른바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이 동의대 사건의 피해자 유족의 명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유족들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건이다.

1989. 5. 동의대 학생들은 노동문제와 학내문제에 대한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부산시경찰국 소속 전투경찰대원 5인을 납치하여 학교 안에 감금하였고, 위 5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동의대 도서관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7인이 사망하였다(이른바 '동의대 사건').

법원은 위 사건에서 방화치사행위에 가담하였던 청구의 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다른 가담자들에게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피청구인)는 유죄판결을 받은 위 윤창호 외 45인을 2002. 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이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동의대 사건에서 사망한 경찰관들의 가족들로서, 피청구인의 위 결정등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인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제3자인바,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기본권이 직접,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화해와 미래지향적 발전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 사건 결정이 그 자체로 순직경찰관들에 대하여 어떠한 부정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행하지

도 의도하지도 않고 있다.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순직경찰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하여 활동한 자로 평가되거나 이들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순직경찰관들은 의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법집행을 위하여 순직하였다는 고귀한 명예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이 사건 결정 및 그 근거 법률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들의 내면의 명예감정에 관계될지언정 법적으로 의미있는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먼저,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는 순간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순직경찰관들이 받아야 마땅한 사회적 평가와 추모는 격하될 수밖에 없고,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死者)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人格像)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유가족에게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더 이상 '법을 지키려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으로서의 명예와 정체감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부당한 공권력 측 하수인의 유족'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겪어지게 되었으므로 명예(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는,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윤○○ 외 6인의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대단히 폭력적인 것이었고 그 결과는 무고한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대단히 중대한 것이었으므로 이들의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법집행을 위하여 진력하다 생명을 희생한 순직경찰관의 유족으로서 청구인들이 지녀온 자긍심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 7인에 대한 결정 부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다. 사후경과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면서 겪었던 역사적 아픔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까지 오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이데올로기·가치관의 대립이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모순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에 관한 입법자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재판관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나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견은, 특정한 시대적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에 갈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입법자의 정치적 합의를 인정하고서, '역사에 대한 평가와 화해'의 과제를 사법부가 직접 떠맡기에는 곤란하다는 사법철학을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사법철학이 잘 드러난 또 하나의 결정으로는 이른바 제주 4·3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238등, 판례집 13-2, 383).

이 사건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해당조항들에 대하여, 4·3사건 진압작전 중 피살된 군인의 유족 등의 청구인들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청구한 헌법소원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특별법이 위령, 의료지원 등 명예회복조치의 대상이 될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서,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하여서만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 침해가 가능하다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라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이 결정에도 헌법소원은 적법하며, 명예권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